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00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공 고

- | | | | |
|----------------|--|-----------|----|
| ○ 공 고 제 1187 호 |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청 소 행 정 과 | 2 |
| ○ 공 고 제 1188 호 |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청 소 행 정 과 | 19 |
| ○ 공 고 제 1204 호 | 국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체 육 진 흥 과 | 26 |
| ○ 공 고 제 1207 호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식 품 위 생 과 | 29 |

고 시

- | | | | |
|---------------|------------------------------------|-----------|----|
| ○ 고 시 제 7 4 호 | 2022회계연도 결산 고시 | 재 무 과 | 30 |
| ○ 고 시 제 7 5 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토 지 정 보 과 | 31 |
| ○ 고 시 제 7 7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 동 주 택 과 | 34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187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비 및 오타 수정 : (안 제2조, 제5조의2, 제8조)
-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 정비 : (안 제4조)
-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 현행화 :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5조의2)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범위 수정 :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청소행정과)
- 연락처 : (☎) 032-453-8492, (FAX) 032-453-25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재정법」 제9조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비 및 오타 수정 : (안 제2조, 제5조의2, 제8조)
-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 정비 : (안 제4조)
-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 현행화 :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5조의2)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범위 수정 : (안 제6조,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재정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라 함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납부금액의 납부방법)”을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 중 “영 제4조제8항”을 “영 제4조제10항”으로 , “납부금액”을 “설치납부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치납부금액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제8조 중 “월하여”를 “이월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의 비율을 말한다. <신설>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 하는 자 중 그 택지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설치납부금액”이라 함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라 함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등을 말한다. <삭제>

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 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
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
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
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
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
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
업지구 대지 조성원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
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
조제3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
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
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
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
2호나목 규정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
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퇴비화·사
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
액. 이 경우“퇴비화·사료
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
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
설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
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자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

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감응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 제10항----- 설치납부금액-----

-----.

제5조의2(존속기한) ① -----
----- 2028년 12월 31일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2. (생략)

<신설>

3. (생략)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신설>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남동구청장-----

-----.

제6조(세입) -----
-----.

1. 설치납부금액

2. (현행과 같음)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세출)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제8조(예산의 이월) -----

- 이월하여 -----.

[참고자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188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 지정하고 관계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경 지정 : (안 제2조제1항)
- 관계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 조례 용어의 오타 수정 :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청소행정과)
- 연락처 : (☎) 032- 453-8492, (FAX) 032-453-25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 지정하고 관계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경 지정 : (안 제2조제1항)
- 관계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 조례 용어의 오타 수정 : (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월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원순환담당”을 각각
“음식물자원화담당”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제47조 및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 6. (생략) 7. 특별회계 지출원 : <u>자원순환담당</u>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u>자원순환담당</u>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u>자원순환담당</u> ② (생략)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음식물자원화담당</u> 8. ----- <u>음식물자원화담당</u> 9. ----- <u>음식물자원화담당</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원가계산용역기관) 조례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남동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제>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준용) ----- ----- <u>운영</u> ----- ----- -----.

[참고자료]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예규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생략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자에 무단점용물 자진 철거 명령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7. 8.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30조(사용허가),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5. 처분대상

위 치	대 상	수량	집행 방법
수산동 595-32번지 (제4호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풋살장 옆)	가설건축물	1개소	철거 및 원상회복

5. 고지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2023. 7. 8.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체육진흥과(☎032-453-6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3.

남 동 구 청 장

사 진 대 지

사 진 명	불법건축물(컨테이너) 사진
대지위치	인천 남동구 수산동 595-32 (제4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풋살장 옆)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3-120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7. 10.
3. 근 거 법 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4. 공 고 기 간 : 2023. 6. 23. ~ 2023. 7. 7.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세탁업	2008-0018	세탁 솔루션	주식회사 세탁솔루션 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20, 올리브백화점고객전용주차 장 1층 전체호(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2023-03-17	2023-07-10

6. 고 지 사 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 7. 7.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453-2634

2023. 6. 23.

남 동 구 청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74호

2022 회계연도 결산 고시

남동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22.

남 동 구 청 장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내용(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산 현 액		1,243,059,170,290	1,215,953,217,690	27,105,952,600
결 산 액	세 입	1,283,493,302,239	1,254,290,820,331	29,202,481,908
	세 출	1,083,215,914,704	1,069,793,293,934	13,422,620,770
결 산 상 잉 여 금		200,277,387,535	184,497,526,397	15,779,861,138
잉 여 금 세 부 내 역	다 음 년 도 이 월 액		85,454,073,410	79,359,091,440
	명 시 이 월	7,099,896,670	7,076,530,510	23,366,160
	사 고 이 월	605,938,320	605,938,320	0
	계 속 비 이 월	77,748,238,420	71,676,622,610	6,071,615,810
	보 조 금 반 납 금		17,909,001,284	17,774,508,633
	순 세 계 잉 여 금		96,914,312,841	87,363,926,324
				9,550,386,517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75호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23.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13 (논현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8-1 (간석동)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길 13 (논현동)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06.23.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236번길 13 기초구간에위치하여 13을건물번호로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8-1 (간석동)	2023.06.23.	건물멸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95번길 94-20 (장수동)	2023.06.23.	건물멸실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64 (간석동)	2023.06.23.	건물멸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7 (만수동)	2023.06.23.	건물멸실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3 (간석동)	2023.06.23.	건물멸실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2 (간석동)	2023.06.23.	건물멸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98 (구월동)	2023.06.23.	건물멸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0번길 16-1 (구월동)	2023.06.23.	건물멸실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67-24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67-23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24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67-17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53-18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67-12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50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48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46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42 (고잔동)	2023.06.23.	건물멸실	

고 시

남동구 공고 제2023-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26.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6.26. ~ 2023.7.10.(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연번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주소지	임대주택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1	허*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번길 ** 1***동 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번길 *** *동 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과태료 30,000,000원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5.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2023.7.14.)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주택계획팀(☎ 032-453-6425) 끝.